

사해에 달라지는 폐기물 관련 제도

올해부터 국민생활과 직결된 환경법 개정안이 새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폐기물 분야의 환경정책 및 제도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폐기물분야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시행과 더불어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대상품목 추가 및 산정기준 조정 등 8개 항목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된다.

우선 섬유제품제조업등 14개 업종 중 연간 200t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생산공정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의 방법이 포함된 자체감량화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이를 사업자단체가 소속사업장에 대해 감량화실태를 평가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관계법에 의한 점검 면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우선지원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치금품목에 PET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선박용 윤활류, 냉장고를 추가하고 부담금품목에 플라스틱용기의 견본화장품(개당 0.7원)과 담배(갑당 4원)가 추가되며 형광등의 경우 저수은형광등(개당 6원)과 일반형광등(개당8원)이 차등부과된다. 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중앙지원이 강화돼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원체계가 시설비의 30%용자에서 30% 국고보조로 변경되고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재활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이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제조, 수입자에게 감량·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 연간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에서 200억원이상 건설업체로 재활용의무대상 건설업체가 확대되고 공사발주자는 공사비에 폐기물 재생처리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설업체와 공사발주자도 재활용의무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지시설에 대한 중앙지원도 강화돼 단독시지역

의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시설비의 30%가 국고 보조되고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3공구 조성과 관련된 지반공사, 차수시설 설치 및 침출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확대돼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m²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감량화 의무가 부여된다.

1. 사업장폐기물 감량·재활용 제도 시행

▶ 배경

- 매년 증가(연평균 10%)추세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근원적 감량 유도.

▶ 주요내용

- 섬유제품제조업등 14개업종 중 연간 200t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생산공정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의 방법이 포함된 자체감량화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화.
- 사업자단체는 소속사업장에 대한 감량화 실태평가 및 우수사업장 선정.
-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한 점검 면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우선 지원등 혜택 부여.

2. 폐기물예치금·부담금 대상품목 추가 및 산정기준 조정.

▶ 배경

- 폐기물부담금·예치금의 요율이 실제 회수·처리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요율과 금액을 인상.
- 예치금 대상품목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예치금 품목에서 PET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선박 용윤활유, 냉장고 추가.
- 부담금 품목에 플라스틱 용기의 견본화장품(개당 0.7원) 및 담배(갑당 4원)를 추가하고 형광등의 경우 저수은형광등(개당 6원)과 일반형광등(개당 8원)을 차등 부과함.

3.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재활용 제도 본격 시행

시행

▶ 배경

- 매립처리에 의존(약 70%이상)하고 있는 국내 폐기 물처리 여건을 감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난분해 성 포장 폐기물의 감량화 필요성 대두.

- ▶ 주요내용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감량화 계획 수립 및 추진의무화.
- 합성수지포장재 사용량의 일정 비율씩 사용량을 줄이거나 회수·재활용.
- 감량·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포함된 계획수립 사항 및 추진실적 관리.
- 관련업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재활용 체계 구축 권고.

<회수·재활용·처리 및 감량화 목표율>

4. 건설폐재류 재활용 촉진.

▶ 배경

-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로 건설 폐재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동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 필요.

▶ 주요내용

- 재활용의무 대상 건설업체 확대
 - 연간시공금액 2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 재활용 의무 대상자 추가.
 - 현 재활용 의무 대상자인 건설업체와 공사발주자도 포함.
 - 공사발주자는 공사비에 폐기물 재생처리비를 의무적으로 반영.

	1998.1.1부터	2000.1.1부터	2002.1.1부터
계란난좌·팩	50%이상	60%이상	—
과일난좌	5%이상	15%이상	60%이상
컵라면용기	—	10%이상	60%이상
잡화류제품의 발침접시류	30%이상	50%이상	60%이상
기타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합성수지포장재	—	—	60%이상

온실효과

지구 둘레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나쁜 공기가 온실의 유리나 비닐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온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지구의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최근 20년 동안 0.3°C 의 기온이 상승하였고 수십년 후에는 더운 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 동·식물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추운 지방은 따뜻해서 남극의 빙산이 녹아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많은 땅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더워지게 하는 나쁜 공기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프레온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려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써끼기도 나오지 않으며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태양의 빛과 열을 많이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